

Guidelines for juries at IOF Events

(IOF 이벤트 심판 지침)

Version November 2023

Issued by: IOF Rules Commission



※ 이 문서는 번역본이므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 지침은 IOF 규정의 심판 부분과 함께 읽어야 한다. (FootO, MTBO, SkiO 및 TrailO 부분 29).

1. General principles(일반 원칙)

- 1.1. 심판은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판결하는 것이 유일한 임무인 독립적인 항소 기관이다.
- 1.2. 이의신청은 불만사항에 대한 주최자의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다. 먼저 불만사항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, 불만사항 신청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1.3. 심판단의 결정은 최종적이다. 결정에 도달하는 데 심각한 절차상의 오류가 있거나 경기규정이 명확하게 잘못 적용되거나 해석된 경우에만 심판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. 항소는 대회가 끝난 후 IOF 징계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.
- 1.4. 스포츠 공정성은 경기자, 주최자, 심판이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.

2. Jury membership(심판단)

- 2.1. 심판은 가능하다면 대회가 진행되기 전에 임명되어야 한다.
- 2.2. 심판의 규모(경우에 따라 구성)는 IOF 규정에 정의되어 있다.
- 2.3. IOF 대회감독관은 심판단을 이끌지만 투표권은 없다.
- 2.4. 주최자 대표는 심판단 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심판단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리를 비우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. 주최자 대표는 투표권이 없다.
- 2.5. 심판은 가능하다면 자격을 갖춘 IOF 대회감독관이어야 하며, 주요 IOF 대회에서는 시니어 대회감독관이어야 한다.

- 2.6. 심판단은 가능한 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. 이상적으로는 심판단에 남성과 여성, 다양한 연맹과 대륙의 회원이 모두 포함된다.
- 2.7. 일반적으로 모든 심판은 대회 현장에 실제 참석해야 한다. 실제 참석할 적합한 심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최대 한 명의 원격 심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2.8. 필요한 경우 대리로 배치할 수 있는 예비 심판을 한 명 이상 미리 지명하는 것이 좋다.

3. Conflict of interest(이해 상충)

3.1. 심판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이해 상충의 예:

- 심판은 이의신청 대상 선수의 가까운 친척이다.
- 심판은 이의신청 대상 선수의 팀 매니저 또는 코치다.
- 심판은 이의신청 대상 선수가 실격/복권되는 경우 메달을 획득/실패하게 되는 선수의 팀 매니저 또는 코치이다.

3.2. 심판의 역할을 방해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의 예: 이 경우 대회감독관은 심판이 충분히 독립적일 수 있는지 여부를 심판과 논의해야 한다. IOF 대회감독관은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.

- 심판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선수와 같은 클럽의 회원이다.
- 심판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선수와 같은 연맹의 회원이다 (WRE에서는 항상 그렇다).
- 심판은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선수가 실격 당하면 상위 6위 안에 드는 선수의 팀 매니저 또는 코치이다.

4. Preparation(준비)

- 4.1. 심판단의 이름은 가능하다면 최종 공지문에 게재되어야 한다.
- 4.2. 심판단은 선수와 팀 관리자에게 배포된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. 심판은 모든 팀 리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. 팀에 속하지 않은 심판은 대회의 모든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4.3. IOF 대회감독관은 심판단이 신속하게 소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전에 수집하고 경기장 내 휴대전화 수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 심판단은 IOF 대회감독관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받아야 한다.
- 4.4. 주최자는 IOF 불만사항/이의신청 서식의 사본을 인쇄하여 경기장의 문의/정보 데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4.5. IOF 대회감독관은 심판들에게 언제 대회에 도착해야 하는지, 보고해야 하는 장소와 언

제 떠날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.

5. On the day(당일에)

- 5.1. 심판단은 대회 주요 지역 (예 : 출발, 도착)을 관찰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. 그들은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떠맡아서는 안 된다.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다.
- 5.2. 심판은 불만사항을 검토하는 데 관여하거나 협의해서는 안 된다. 불만사항은 필요한 경우 IOF 대회감독관의 조언을 받아 주최자가 결정해야 한다. 그러나 심판단은 불만사항의 내용과 주최자의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, 특히 주최자가 이의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.
- 5.3. 심판은 대회에서 판사나 보안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.
- 5.4. 모든 이의신청은 공식 불만사항/이의신청 서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, 이 서식에는 본래의 불만사항과 해당 불만사항에 대한 주최자의 결정이 나와 있어야 한다. 모든 이의신청은 주최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결정을 발표한 후 15분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6. The jury meeting(심판 회의)

- 6.1. 심판단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.
- 6.2. 대회감독관은 IOF 규정과 최종 공지문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.
- 6.3. 심판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. 긴급한 경우에는 심판 과반수가 결정에 동의할 경우 예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.
- 6.4. 심판이 스스로 편견이 있음을 선언하거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IOF 대회감독관은 대체자를 지명해야 한다.
- 6.5. 본래의 불만사항, 불만을 기각한 이유 및 이의신청을 고려한 후 심판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.
 - 지도 또는 문서를 보는 것에 의한 것
 - 선수나 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(필요한 경우 통역사와 함께)
 - 지형상의 위치를 방문하는 것에 의한 것
 - 사진, 비디오 또는 TV 화면을 보는 것에 의한 것
 - GPS 추적, 전자 또는 컴퓨터 장비로부터 판독을 얻는 것에 의한 것
- 6.6. 심판은 필요한 경우 규정위원회 위원의 규정에 대한 지원과 같은 외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. 외부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회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.
- 6.7. 심판단의 결정(이유 포함)은 불만사항/이의신청 양식에 기재하거나 첨부해야 한다. 심판단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대회감독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투표 수치

가 포함될 수 있다. 심판이 어떠한 사유로든 참가하지 않거나 대체 심판으로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.

- 6.8. 각 심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사항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.
- 6.9. 심판단의 결정에 대한 세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대회감독관은 심판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심판에게 임무를 위임해야 한다. 심판의 개인적인 의견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. 다른 심판들은 이후에 선수, 임원, 관중 또는 언론과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.
- 6.10. 항의서를 제출한 사람과 기타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심판단의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. 적절한 경우 결정은 발표자가 발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.

7. Guidance on decision making.(의사결정 지침)

- 7.1 이의신청을 검토할 때 심판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.
 - 증거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? (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)
 - 주최자가 위반에 대해 책임을 졌는가(예: 금지된 루트를 녹화하지 않은 경우)?
 - 해당 선수가 위반으로 인해 어떤 이점을 얻었는가?
 - 위반(예: 환경 훼손 또는 사유지 침해)으로 인해 스포츠의 위상이 손상되었는가?
 - 공정성-올바르게 행동한 운동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
 -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타 문제

8. The jury' s powers(심판의 권한)

- 8.1.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서 심판은 스포츠 공정성에 따라 규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.
 - 규칙 위반으로 선수나 팀의 실격 처리
 - 팀이나 선수 복귀
 - 동시출발 형식 경기에서 점프 스타트에 대한 시간 벌칙을 부과하거나 수정한다.
 - 선수를 IOF 징계위원회에 회부
 - 클래스 결과를 무효화하거나 확인한다.
- 8.2. 주최자는 심판단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.

9. After the event(대회 종료 후)

- 9.1. IOF 대회감독관은 대회 후 4주 이내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이의신청의 세부사항과 심판단의 결정을 보고해야 한다. 작성된 불만사항/이의신청 서식의 전자 버전을 보고

서에 첨부해야 한다.

관련 문서는 IOF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
- 불만사항/이의신청 서식
- 경기 취소

Changes November 2017(2017년 11월 변경 사항)

- 심판단 운영에 심각한 절차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심판단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.
- 주최자 대표는 심판단 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심판단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퇴장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. 주최자의 대표는 투표권이 없다.
- IOF 대회감독관은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.
- 이해상충의 예 변경사항 2023년 11월

Changes January 2019(2019년 1월 변경 사항)

- 단락 번호
- 팀 임원인 심판은 대회의 모든 구역에 접근할 수 없다.
- 심판단의 결정은 양식에 기재되어야 한다.

Changes November 2023(2023년 11월 변경사항)

- 작은 변화와 “해야 한다/해야 한다” 가 “반드시” 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.
- 불만사항 신청자만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.
- 필요한 경우 최대 한 명의 원격 심판을 운용할 수 있다.
- 심판단의 결정에 대한 항소 근거 명시
- 항소는 대회 후 IOF 징계위원회에서 검토된다.
- 심판이 이의신청 대상 선수와 같은 클럽의 회원인 경우, 심판의 결정(임무)을 방해할 수 있다(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)
- 심판단은 TV 화면이나 GPS 추적을 고려할 수 있다.
- 심판이 어떠한 사유로든 참석하지 않거나 대체자로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.
-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결정을 알려야 한다.
- 새로운 섹션: 의사결정에 대한 지침
- 새로운 섹션: 심판의 권한